

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체로서 10년간재해도 없는데 보험료 감면혜택은 없는지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1백%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산재보험신고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30인 이상이고 보험관계가 설립된지 3년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3년간 재해가 발생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수지율을 참고해 적용받고 있는 보험요율 50%를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요율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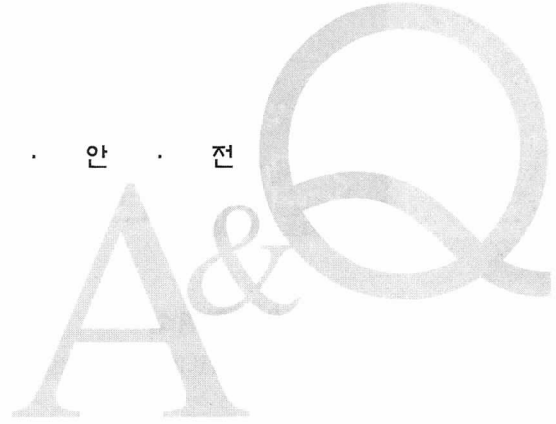
우리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이 가능합니까?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회사에서 고용한 노동자에게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에 회사에서 생산하는 최종생산품, 작업공정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참고로 사업종류는 재해의 위험도에 따라 6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용, 일용, 시간제노동자, 불법외국인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현장실습생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위생및보건담당자로서 수질환경, 대기환경산업,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은 전용상수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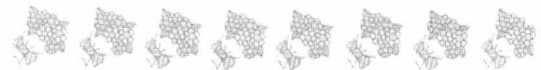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표준안전관리비 중 2항 가설 전기설비는 목적외 사용이며 접지시설은 사용가능 항목인데, 현장내에서 2P선은 접지선이 없어서, 3P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사용 지도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3P접지선이 있는 가설전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그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3P 가설전선의 설치목적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 개정 되었음.

